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63

발의연월일: 2021. 1. 8.

발 의 자:전용기·김윤덕·윤재갑

오영환 · 최혜영 · 임종성

정청래 • 권칠승 • 고영인

최종윤 • 전혜숙 • 한병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매년 사망 사고를 동반한 대형 식중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,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감염병 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법령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식품 관련 영업자와는 달리, 조리사와 영양사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주기도 2년마다 실시 하고 있어, 식품위생 대처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.

이에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강화하여,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을 향상하고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(안 제5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6조제1항 단서 중 "2년"을 "1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제56조(교육) ① 식품의약품안전 | 제56조(교육) ① |
| 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 | |
| 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| |
|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(조리 | |
| 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 | |
| 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받 | |
| 을 것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집 | |
| 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| |
| 영양사는 <u>2년</u> 마다 교육을 받아 | <u>1년</u> |
| 야 한다. | |
| ②・③ (생 략) | ②・③ (현행과 같음) |